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25일, 박은정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 9. 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1소위(2024. 9. 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4. 9. 11.)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5차 전체회의(2024. 9. 11.)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은정의원)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한 해병대 수사단은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채 해병 소속 부대 최고 책임자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하였음.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는 등 수사 축소, 외압이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 전 장관을 주호주 한국대사로 임명해 ‘도피성 출국’이 이뤄짐. 당시 출국 금지된 이 전 장관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금지 처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의혹도 떠올랐음.

또한 임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블랙펠인베스트 전 대표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됨.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주변에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를 VIP에게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상황에서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 주체인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여러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조사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등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나아가 전현직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는 현 공수처법의 한계로 인해,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결국 검찰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없 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승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유상범 위원)

- 제3자 추천 특검이라는 것이 흔하지 않은 데다가 비토권을 규정해서 유례 없는 법안을 만들었음.
-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특검을 이야기 했으니 그대로 낸 것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대로 실질적인 특검도 아님.

(김승원 위원)

- 명백한 법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통과되어 특검이 시행되어야 함.

- 현재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정권의 영향력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매우 높으므로 독립적인 특검에 의한 수사가 필요함.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